「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」

 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13(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: 산림과장 남동선)

-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내지 제3조)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내지 제6조)
 - 입장료 징수기준 : [별표1]
 - 시설사용료 징수기준(주차장, 야영장, 산림문화휴양관, 숙박시설) : [별표2]
- 입장료 등의 감면, 추징,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9조, 제12조)
 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: [별표3]
- 입장제한 및 퇴장, 휴양림의 사용제한,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, 제10조, 제11조)
-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내지 제19조)
-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내지 제21조)
- 기타 제반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 내지 제2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」조성에 따라 효율적 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 고 위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입장료와 함께 시설사용료를 개인 및 단체와 성수기,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
 - 사용료 감면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
 - 자연휴양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·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단가 산정에 있어 타 시설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며,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임.
- 특히, 자연휴양림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소규모이고 리조트 등에 비해 프로그램이 정적이고 흥미를 일으킬만한 부대시설이 다양하 지 못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 려가 있으므로

-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 마케팅전략 및 휴양림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브랜드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.